

DREAM NEWS LETTER

- 2018 FEBRUARY 제007호 -

FTA NEWS +

< PA 주요경제지표 >

	PA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인구	2.2억명	1.2억명	1,820만명	3,150만명	4,875만명
GDP	1.77조불	1.05조불	2,470억불	1,950억불	2,824억불
수출 (대세계)	5008억불	3739억불	599억불	360억불	310억불
역내비중	-	1.7%	5.8%	6.05%	8.6%
수입 (대세계)	5269억불	3871억불	588억불	362억불	449억불
역내비중	-	0.77%	6.4%	11.1%	10.7%

* 인구, GDP : IMF 2016 (2017.4월 기준) / ** 수출입 : ITC('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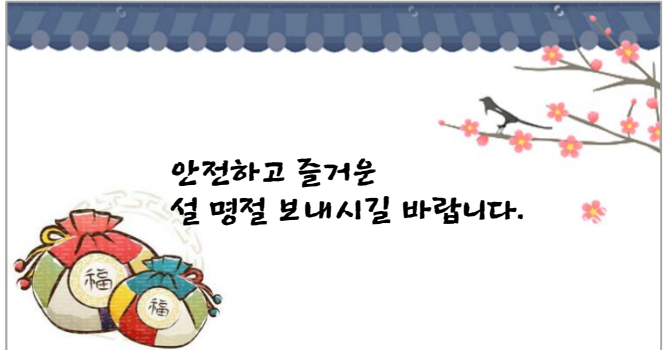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제 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대비 대응방안 논의

TPP11 대략합의를 계기로 국제 규칙 구축 선두에 선 일본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2018년으로 연기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CUSTOMS NEWS +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무역위, 대만태국 UAE산 PET필름에 덤핑방지관세 확정

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AEO NEWS +

[서울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2018년 수출입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DREAM FTA SERVICE



C/O, 원산지확인서
발행 대행



FTA관리업무
OUTSOURCING



FTA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정부지원사업

DREAM NOTICE +

➡ 2018년도 FTA 정부지원사업 시행예정(OK FTA, YES FTA, 상공회의소, 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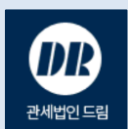
[2018. 02. ~]

➡ 2018년도 HKMC FTA 평가 및 실사 예정(2018년 2월부터)

[2018. 02. ~]

➡ 2018년 관련 법 개정사항(일부)

CONTACT



구분
컨설팅 본부장
FTA 1팀장
C/S 본부장

담당자
관세사 신성훈
관세사 최평수
관세사 박재규

TEL.
070-4870-3533
070-4060-7535
070-4060-8823

E-MAIL
sh.shin@drcus.co.kr
dr003@drcus.co.kr
jkcus@drcus.co.kr

DREAM NEWS LETTER

FTA NEWS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준회원국 가입 추진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2.(금) 10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했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남미 지역 자유무역의 선두주자이자 핵심경제권의 하나로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한-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가진다. 이를 통해,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2018년 1월 11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

[>> READ MORE](#)

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대비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1.5, 미국) 결과를 공유하고 2차 개정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자동차 비관세 등 미국이 1차 협상에서 제기한 이슈별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측 관심 이슈별 구체적 제기사항 및 전략을 논의했다.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시기는 미국과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 2018년 1월 16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 READ MORE](#)

제1차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美 무역대표부(USTR)는 제1차 한. 미 FTA 개정협상을 1.5일(금,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다. 양측은 지난 제2차 한. 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17.10.4일)에서 한. 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ISDS, 무역구제 등을 우리측 관심분야로 제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 2018년 1월 6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

[>> READ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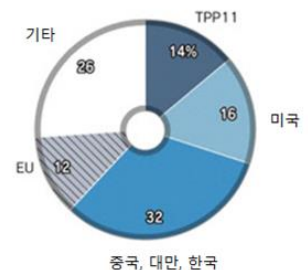
TPP11 대략 합의를 계기로 국제 규칙 구축 선두에 선 일본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미국을 뺀 11개국에 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새 협정 'TPP11(CPTPP)'이 대략 합의에 성공, TPP 발효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된다. TPP11은 높은 관세 철폐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기존 FTA에서도 이루지 못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 조달에서의 무차별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앞서 일본은 일찌감치 TPP 비준 절차를 밟고 관련 법안도 통과시키는 등 국내적으로 조치해야 할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감히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다.

- 2018년 1월 8일,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 READ MORE](#)

일본의 수출입액 점유율(2016년)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2018년으로 연기

12월 20일, EU와 멕시코는 브뤼셀에서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 7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개정을 2018년까지 연기하기로 발표하였다. 협상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2018년 연초에 추가적인 작업 후 완료될 예정이다. 당초 연내 완료 예정이었던 EU-메르코수르(Mecosur) 무역협정 타결, EU-멕시코 무역협정 개정이 내년으로 연기되며 EU의 대남아메리카 무역협정 강화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에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현 시점에서 수출 비중이 작은 상황이다. 멕시코보다 큰 시장인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타결하고, 영국과 브렉시트 1차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굵직굵직한 통상 이슈를 연내에 완료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EU의 대남아메리카 무역협정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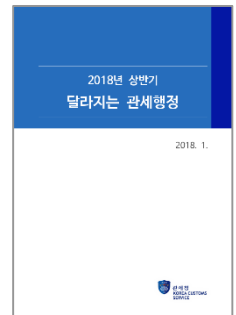
- 2018년 1월 2일,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 READ MORE](#)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반영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주요내용: 세관장이 관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경우 지금까지 납세자의 단순 착오가 있거나 귀책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을 허용한다. - 2018년 1월 4일,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

[>> READ MORE](#)



무역위, 대만 태국 UAE산 PET필름에 덤핑방지관세 확정

무역위원회는 28일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판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 2018년 1월 18일, 출처 : 파이낸셜 뉴스 -

[>> READ MORE](#)

관세청,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9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2018년 1월 26일, 출처 : 데일리안 -

[>> READ MORE](#)

AEO NEWS

[서울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정일석)은 23일 관내 8개사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획득한 업체는 향후 수출입 물품검사가 대폭 생략되고 세관신고에 대한 자동수리비율이 상향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 : Account Manager)으로부터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18년 1월 23일, 출처 : 조세일보 -



*사진출처: 조세일보

[>> READ MORE](#)

2018년 수출입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1월 8일(월)부터 2018년도 전체 일정에 대한 교육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일정 및 신청 방법은 링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AD MORE](#)

DREAM NOTICE

2018년도 FTA 정부지원사업 시행예정 (OK FTA, YES FTA, 상공회의소, 교육 등) [2018. 02. ~]

2018년도 HKMC FTA 평가 및 실사 예정(2018년 2월부터) [2018. 02. ~]

2018년 관련 법 개정사항(일부)

2018년 관련 법 개정사항(일부)

개정법규	관세법(일부개정)
개정취지	<p>가. 관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제19조제5항제1호나목 신설)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 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가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p> <p>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을 그 결정·경정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p> <p>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18조 제4항 제2호 후단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 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추가함.</p> <p>라.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장의 의견서 송부 의무(제132조 제4항 단서, 제132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이의신청인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인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도록 함.</p>
시행일	2018. 1. 1. 시행

개정내용

관세법(개정전)	관세법(개정후)
<p>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p> <p>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p>	<p>제19조(납세의무자) ① ----- -----.</p> <p>1. ----- 수입신고하는 때의 ----- ----- ----- 관세액이 부족한 ----- ----- 수입신고하는 때의 ----- ----- ----- 수입신고하는 때의 ----- -----.</p> <p>⑤ ----- -----.</p> <p>1.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제271조제1항(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p>

관세법(개정전)	관세법(개정후)
<p>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u>2개월</u>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 ----- ----- ----- ----- ----- ----- ----- ----- 3개월 ----- -----</p>
<p>110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생략)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p>	<p>제110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p>
<p>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p>	<p>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④ ----- -----</p> <p>2.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 ⑥ ----- 제126조, 제128조제5항·제6항 -----</p>
<p>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후단 신설> ⑤ <신설> ⑥ <신설></p>	<p>제128조(결정) ① ----- -----</p> <p>3. ----- 이 경우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후단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2조(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⑤ <신설> ⑥ <신설></p>	<p>제132조(이의신청) ④ ----- -----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60일”)----- 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⑥ 이의신청인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p>

개정법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개정취지	가.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의 보완(제6조의3 및 제10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만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함.
시행일	2018. 1. 1. 시행

2018년 수출입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수출입관리책임자 교육신청 및 수정, 취소 방법

>> READ MORE

▪ 수출입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과정명	개설 대상	차수	교육기간	지역
수출입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수출입 /관세사	1	02월 21일(수)	서울
		2	03월 13일(화)	서울
		3	04월 11일(수)	부산
		4	05월 17일(목)	서울
		5	06월 14일(목)	인천
		6	06월 27일(수)	청주
		7	07월 12일(목)	광주
		8	07월 24일(화)	서울
		9	08월 22일(수)	서울
		10	09월 12일(수)	서울
		11	10월 17일(수)	인천
		12	11월 08일(목)	부산
		13	12월 11일(화)	서울
수출입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물류	14	02월 22일(목)	서울
		15	03월 14일(수)	서울
		16	04월 12일(목)	부산
		17	05월 18일(금)	서울
		18	06월 15일(금)	인천
		19	06월 28일(목)	서울
		20	07월 13일(금)	광주
		21	07월 25일(수)	서울
		22	08월 23일(목)	서울
		23	09월 11일(화)	서울
		24	10월 18일(목)	인천
		25	11월 09일(금)	부산
		26	12월 12일(수)	서울